

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6년 7월 2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79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.

제7조의 2에 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3항을 신설한다.

-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채용 전 해당 업무의 성격, 채용 사유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채용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인사담당부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 따라 채용의 타당성 및 상시·지속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사전심사 절차, 기준, 위원회 운영 등 운영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관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재 덕 (3 9 0 - 7 6 0 9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 2(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 심사)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전 해당부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담당부서에 채용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사전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	제7조의 2(기간제근로자 채용사전 심사) ① ----- 채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의 성격, 채용 사유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채용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인사담당부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 따라 채용의 타당성 및 상시·지속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③ 사전심사 절차, 기준, 위원회 운영 등 운영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